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서식에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부재하여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 토지의 분할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벌채”를 “벌채, 토지의 분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물건”을 “토지의 분할, [] 물건”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위치(지번)					지목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죽목 재식 현황	주요 수종				
			임목이 있는 토지		임목이 없는 토지		
		신청 면적					
	토석의 채취	신청 면적			부피		
	죽목의 벌채	수종		면적		수량	
	토지의 분할	종전 면적			분할 후 면적		
	물건의 적치	종량			부피		
품명				평균 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허가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가. 축사 나.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다. 임시시설 4.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하고자 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신청서 등) 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u>벌채</u> 및 물건의 적치에 관한 허가 :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2. ----- ----- <u>벌채, 토지의 분할</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